

강원도립대학교 국가장학(Ⅱ유형) 운영에 관한 지침

(제정) 2013-06-25 규정 제321호

(개정) 2016-04-25 규정 제397호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국가장학(Ⅱ유형) 운영에 필요한 대학자체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국가장학(Ⅱ유형) 대상자 선발 및 지급에 있어서 국가 또는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지침에 따른다.

제3조(지급대상) ① 국가장학(Ⅱ유형)은 국가장학(Ⅰ유형)의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지급한다.

②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심사에서 탈락한 학생 중 긴급한 경제사정의 변화 등의 사유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학사정관의 추천을 거쳐 소득분위,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국가장학 (Ⅱ유형)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4조(지급계획수립) 총장은 당해년도 국가장학 Ⅱ유형의 대학 배정액을 고려하여 매 학기 Ⅱ유형 장학금의 소득분위별 배분액 등을 포함한 지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5조(위원회) 제3조 제2항의 장학사정관 추천에 대한 심의 등 국가장학 운영을 위해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강원도립대학교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제6조(부당수령 환수) 장학금 신청 혹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한다.

부 칙(2013. 6. 25)

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 4. 25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